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근무기관 및 부서내 괴롭힘 등을 근절·조사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8657호)

2021. 4.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박재유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득구 · 김민기 · 홍성국 · 이원욱 · 김민석 · 이상현 ·
이용빈 · 민병덕 · 이장섭 · 김진애 · 김영호 의원(11인)
2. 발의연월일 : 2021. 3. 9.
3. 회부연월일 : 2021. 3.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고충심사의 결과에 따라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의 갑질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에 그치고 있고, 각 직렬별, 직종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 조사의 공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고충심사위원회 산하에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적극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9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고충처리) ① ~ ⑦ (생략) <u><신설></u>	제49조(고충처리)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교육공무원의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교원 등 다양한 구성원 중에서 고루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u>
<u><신설></u>	<u>⑨ 제8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하도록 해당 기관의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⑧ 교육공무원 <u>고충심사위원회</u> 의 구성·권한·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 <u>고충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u> ----- ----- -----.
---	---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9조1)(고충처리)에 따라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1)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임용추천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④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
 2.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원장의 고충
 3.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중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연수기관의 장, 교육연구기관의 장, 교원연수기관의 장의 고충
- 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의 고충
 2. 제3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
 3.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고충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원래 소속 기관의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 ⑦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⑧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제2조2)에 따라 공무원은 누구나 ①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 ② 성폭력범죄·성희롱, ③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규정 제3조의4³⁾에서는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⁴⁾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당한 행위가

2)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고충처리대상)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이하 “성희롱”이라 한다)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의 고충을 예방하고 고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4(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③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교원 또는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정신건강의학과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대학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상당 부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이른바 “갑질”의 신고 접수 및 처리, 피해자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괴롭힘 사안 발생 시 교육청 감사관실 등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서울시교육청 갑질근절 매뉴얼 상 갑질의 개념>

-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위법·부당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적법·정당한 행위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
- ※ 발췌: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3575, 2018.7.16.)
- ※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여 개념 정립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2018.12.24.)
-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사항을 반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사항 신설

자료: 서울시교육청 갑질근절 매뉴얼(2020. 3. 감사관)

고충심사위원회에 교원에 대한 근무기관 내 괴롭힘 등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가 구성·운영될 경우 분야별 고충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분과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및 “감사관”을 통한 조사 및 조치와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강원 등 5개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강원 등 5개 교육청】

- 교육청에서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갑질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 피해(신고)자 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은 사안 처리 절차의 반복 등으로 처리의 지연 등 신속한 지원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84